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32
----------	-----

2023년 6월 2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최기찬 의원 외 2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기찬 의원)

-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의 이용료 감면

(50%) 기준을 현행 다자녀 가족 기준(자녀 2명)에 맞춰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규정함. (안 별표3제1호나목)
-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규정함. (안 별표3제2호나목)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 두자녀 “다둥이 행복카드¹⁾” 소지자에 대해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이하 “편익시설”)’ 이용료를 30% 감면하던 현행에서 50%(현행 세자녀 이상 감면율)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별표3제1호나목, 안 별표3제2호나목)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1. 체육시설 나. 기타		[별표 3] 1. 체육시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감면대상	감면율 (%)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삭 제>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	10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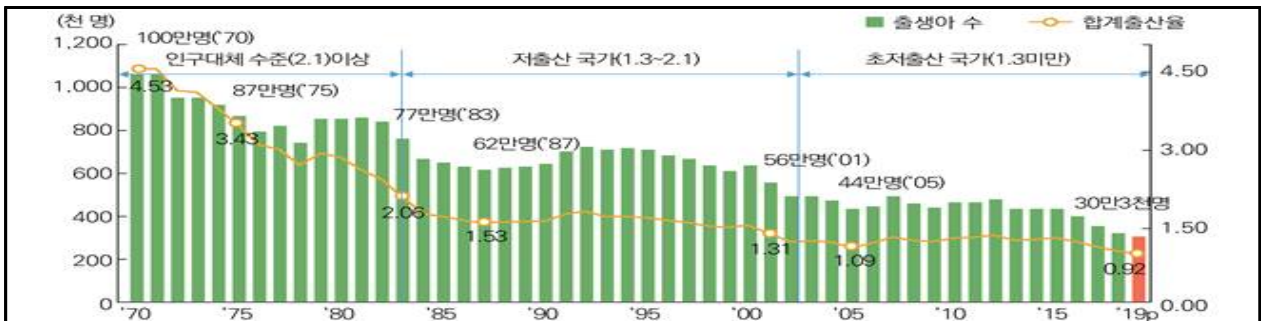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3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 8. (생략)

현행	개정안																				
<p>제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p> <p>2. 주차시설</p> <p>나. 기타</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 <th>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td> <td>50</td> </tr> <tr> <td>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td> <td>30</td> </tr> <tr> <td>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td> <td>30</td> </tr> <tr> <td>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td> <td>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p>제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p> <p>2. 주차시설</p> <p>나. 기타</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 <th>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td> <td>50</td> </tr> <tr> <td><삭제></td> <td></td> </tr> <tr> <td>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td> <td>30</td> </tr> <tr> <td>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td> <td>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삭제>		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삭제>																					
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국내 출산율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졌고,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20)

- 정부는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²⁾을 수립하고 주거·교육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다자녀가구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다자녀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할인,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다음 [표 3]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

[표 3] 서울특별시 각종 요금 다자녀 가구 지원 현황

유형	서비스명	소관기관	신청절차	접수기관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 카드 발급 시 서울시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서울시 (가족담당관)	방문	·신분확인용카드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 우리은행영업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국민연금공단지사
세자녀 이상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서울시 (임대주택과)	방문, 인터넷	sh공사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방문	시군구 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영유아의료비	보건복지부	방문	시군구 보건소
	(다자녀)주택특별 공급제도	국토교통부	방문	내공사
	(다자녀)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방문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금융기관
	(다자녀)도시가스 요금경감	한국가스공사	자격증명을 준비하여 방문, 팩스, 우편	관할 도시가스회사
	(다자녀)전기료감액	한국전력공사	전력공사방문, 우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할 전력공사지점
	(다자녀)난방비감면	한국지역 난방공사	인터넷 (연회 산정 후 지급), 설차지역	지역난방공사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행정안전부	방문 (가족관계 등록부 지참)	주소지 시군구

2)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0.12.15.

■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 현행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편익시설은 [표 4]와 같으며 이 중 대부분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14면)과 파크골프장(9홀), 탄천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주차장(125면)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

[표 4]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별 편익시설 현황

센터명	규 모(㎡)	체육시설 현황	비 고
중랑물재생센터	3,600	- 축구장 1면	-
	560	- 실내 배드민턴장 4면	-
	860	- 풋살장 1면	-
	1,108	- 족구장 2면	-
	1,209	- 테니스장 2면	-
난지물재생센터	496	- 테니스장 4면	-
	660	- 다목적구장(족구장1면,농구장1면)	-
	6,400	- 축구장 1면	-
탄천물재생센터	629	- 게이트볼장 1면	북개공원 1단계
	437	- 배드민턴장 2면	
	1,289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1,320	- 농구장 2면	마루공원
	2,004	- 족구장 2면	
	2,253	- 풋살장 2면	
	2,367	- 테니스장 3면	
	3,850	- 주차장 125면	
	2,070	- 족구장 2면	에코파크
	1,568	- 풋살장 1면	
	9,800	- 축구장 1면	탄천센터 내부
1,232	- 테니스장 2면		
서남물재생센터	12,700	- 테니스장 14면	-
	144	- 실내탁구장 4면	-
	12,210	- 파크골프장 9홀	-
	5,589	- 축구장 1면	-

-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용실적은 없으며,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장의 경우 두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만 고려할 때 연평균 약 214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5]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장 다둥이카드 소지자 사용료 감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총징수액	감면 전 징수액	감면액	감면 후 징수액	총징수액	감면 전 징수액	감면액	감면 후 징수액
합계		6,147	9,674	3,526	6,147	7,198	11,313	4,116	7,198
탄천 주차장	3자녀 이상	1,561	3,123	1,561	1,561	1,805	3,609	1,805	1,805
	2자녀	4,586	6,551	1,965	4,586	5,393	7,704	2,311	5,393

■ 개정안 검토의견

- 안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은 두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편익시설 사용료 현행 30% 감면 규정을 현행 세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감면을 50%로 상향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모두 일률적으로 50% 감면을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져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서울시 역시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본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참고로, 비용추계 미침부사유서를 살펴보면 감면율 확대(50% 감면율)에 따른 세입 손실액은 기존(30% 감면율) 대비 연평균 약 143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 이는 2023년 기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약 8,86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수도사업 운용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3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최기찬, 강석주,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성준,
김지향,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홍국표,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
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의 이용료 감면(50
%) 기준을 현행 다자녀 가족 기준(자녀 2명)에 맞춰 확대하여 저출
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규정함. (안 별표3제1호나목)
- 나. 물재생시설 내 주차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규정함. (안 별표3제2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자치법 , 하수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7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8을 삭제하며, 같은 목 9부터 12까지를 8부터 11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1의 감면대상란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하며, 같은 목 12를 삭제하고, 같은 목 13 및 14를 각각 12 및 13으로 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3]</p> <p>1. 체육시설</p> <p> 나. 기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 (%)</th> </tr> </thead> <tbody> <tr> <td>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8.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p>2. 주차시설</p> <p> 나. 기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12.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p>[별표 3]</p> <p>1. 체육시설</p> <p> 나. 기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 (%)</th> </tr> </thead> <tbody> <tr> <td>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p>2. 주차시설</p> <p> 나. 기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감면대상	감면율 (%)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감면대상	감면율 (%)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감면대상	감면율(%)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